

# 「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# 심사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2년 7월 12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: 2022년 7월 18일 회부
- 상정일자: 제276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 
(2022년 7월 18일 상정·의결)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교육체육과장)

#### 가. 제안이유

「국민체육진흥법」 일부개정으로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운영비 지원을 필수 사항으로 명시하고 이를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「평창군 체육진흥 조례」에 반영하고,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결과를 반영하려고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평등한 체육의 진흥 및 지원 조항 신설(안 제10조의5)
  - 전문체육, 생활체육, 장애인체육을 위한 시책 마련 시 성, 연령, 장애 유형, 지역특성 등 고려
- 체육회 운영비 지원 등 조항 신설(안 제10조의6)
  - 평창군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지원  
(상근직원 인건비 및 부대경비, 사무실 운영경비 등)
  - 체육회는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을 사전에 군수와 협의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남섭)

#### ○ 본 조례안은

「국민체육진흥법」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,  
평창군체육회에 운영비 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고,  
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조문·조항을 현실에 맞게  
정비하고자 함.

#### ○ 주요내용은

안 제2조제6호에서는 “체육단체”의 정의 부분을 신설하였으며,

안 제10조의6에서는

평창군체육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지원을 필수사항으로  
명시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음.

#### ○ 검토결과,

「국민체육진흥법」 개정에 따른 내용 중

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,

미흡한 조문·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등

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### 5. 토론요지: 없음

### 6. 심사결과: 원안의결

### 7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
붙임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##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“체육단체”란 「국민체육진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2조9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.

제3조 중 “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5조”를 “법 제5조”로 한다.

제3장 및 제4장을 각각 제4장 및 제5장으로 하고, 제10조의2 앞에 “제3장 체육진흥 및 체육단체 지원”을 삽입한다.

제10조의5 및 제10조의6을 각각 제10조의7 및 제10조의8로 하고, 제10조의 5 및 제10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**제10조의5(평등한 체육의 진흥 및 지원)**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에 따른 시책을 마련할 경우 성, 연령, 장애유형,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
**제10조의6(체육회 운영비 지원 등)** ① 군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평창군체육회(이하 “체육회”라 한다)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한다.

1. 상근직원 인건비 및 그 부대경비
  2. 사무실 운영경비
  3. 그 밖에 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
- ② 제1항의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, 지급금액,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

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.

③ 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.

제10조의7(종전의 제10조의5) 제1항중 “제10조의4제2항”을 “제10조의4제2항, 제10조의6제1항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0조의6은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| 개 정 안   |
|--|---|
|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br>1. ~ 5. (생 략)<br><u>&lt;신 설&gt;</u>   | 제2조(정의) -----<br>-----.<br>1. ~ 5. (현행과 같음)<br>6. “체육단체”란 「국민체육진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2조9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.         |
| 제3조(설치)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의 심의를 위하여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 소속하에 평창군 체육진흥 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<br><u>&lt;신 설&gt;</u> | 제3조(설치) 법 제5조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.<br><u>제3장 체육진흥 및 체육단체 지원</u> |
| 제10조의2 ~ 제10조의4 (생 략)<br><u>&lt;신 설&gt;</u>  | 제10조의2 ~ 제10조의4 (현행과 같음)  |
| <u>&lt;신 설&gt;</u>   | 제10조의5(평등한 체육의 진흥 및 지원)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에 따른 시책을 마련할 경우 성, 연령, 장애유형,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u>&lt;신 설&gt;</u>   | 제10조의6(체육회 운영비 지원 등) ① 군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평창군체육회(이하 “체육회”라 한다)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<u>한다.</u></p> <p><u>1. 상근직원 인건비 및 그 부대<br/>경비</u></p> <p><u>2. 사무실 운영경비</u></p> <p><u>3. 그 밖에 체육회 운영에 필요<br/>한 기본경비</u></p> <p><u>② 제1항의 운영비의 구체적 기<br/>준과 범위, 지급금액, 부당집행<br/>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<br/>사항은 군수가 정한다.</u></p> <p><u>③ 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<br/>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<br/>대해서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<br/>여야 한다.</u></p> |
| <u>제10조의5(보고 · 검사)</u>      | <p>① 군수는</p> <p>제10조의2제2항, 제10조의3제2<br/>항,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보<br/>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 대하여<br/>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<br/>장부 · 서류 등을 검사할 수<br/>있다.</p> <p>② (생 략)</p>  |
| <u>제10조의6 (생 략)</u>         | <p>-----</p> <p>-----제10조의4제2항, 제<br/>10조의6제1항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  |
| <u>제3장 체육 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</u> | <u>제10조의8 (현행 제10조의6과 같음)</u>  |
| <u>제11조 ~ 제17조 (생 략)</u>    | <u>제4장 체육 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</u>  |
| <u>제4장 보 칙</u>              | <u>제11조 ~ 제17조 (현행과 같음)</u>  |
| <u>제18조 ~ 제19조 (생 략)</u>    | <u>제5장 보 칙</u>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>제18조 ~ 제19조 (현행과 같음)</u>  |